

제 1073 호
85.4.19 자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
공보관 조남준
전화 : 731-6111-3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화 : 735-6090

시 보

차 례

◎ 고 시	
제 269 호 : 도시계획시설 (학교, 도로) 변경결정	3
제 270 호 :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	3
◎ 공 고	
제 249 호 :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	4

공											
람	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269 호

도시계획시설 (학교, 도로)
변경결정 고시

1. 우리시관내 도시계획시설 (학교,

○ 시설조서

1. 학 교

구분	시설명	위 치	면 적 (㎡)			비 고
			기 정	주 가	변 경 후	
변 경	학 교	도봉구중계동 410-1 일대	7,141	757	7,898	증) 757㎡

2. 도 로

구분	등급	류별	폭원	연장(㎞)	기 점	중 점	비 고
기정	소로	1	10	270	도봉구중계동 269-1	도봉구중계동 412-1	
변경	소로	1	10	270	"	"	노선중일부폐지

별첨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270 호

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
의거 만영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승
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5 규
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5. 4. 19

서울특별시장

다 음

1. 사업명 ;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
2. 사업주체 ;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은
동 424-1(주)원일주택
대표 ;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은동 431
신 인 식
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은동 9-113
김 백 동
3.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규모
가. 위치 ;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

278-7,8

나. 면적 ; 5,600.70 ㎡

다. 규모 ; 연립주택 3 층 5 동 99 세대

4. 사업시행기간 ; 85.4-85.10.30

공 고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249 호

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
위한공람공고

1. 건설부고시 제 470 호 (' 73.12.1) 및 동고시 제 55 호 (' 81.2.20) 로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 762 호 (' 84.12.18) 로 사업계획결정된 주택개량 재개발 상계제 5 구역 제 1 지구중 일부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31 조의 규정에 의거 동 인가내용을 공고일로부터 30 일간,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와 도봉구청 주택과

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, 인가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안에 도봉구청 주택과에 의견서를 제출하기 바란다.

1985. 4. 19

서울특별시장

가. 공고내용

- 1) 사업의 명칭 : 주택개량 재개발사업
- 2) 시행구역 및 면적 : 상계제 5 구역 제 1 지구 (도봉구상계동 1112, 1113 일대)
상계제 5 구역 (74,836 ㎡, 제 1 지구 (12,580 ㎡) 중 일부 (5,631 ㎡)
- 3) 사업시행계획
○ 연립주택 3 층 6 동 72 세대 (13평형)
○ 관리동 1 동
- 4) 설계도서 ; 생략
- 5) 시행자 ; 서울특별시장
- 6) 토지소유자 ; 시유지
- 7) 공람공고기간 ; 1985. 4. 21 ~ ' 85. 5. 20 (30 일간)